

제433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19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2)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5)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0)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8)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7)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6)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5)

상정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2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2) 2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2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2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2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2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2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2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2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2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2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2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5)	3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0)	3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8)	3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3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7)	3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6)	3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5)	3

(10시38분 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첫 소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2)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5)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0)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8)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7)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6)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5)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1항까지 이상 총 21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먼저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선관위 측 의견 듣고 위원님 의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21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지방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목차를 봐 주시면 한 개정안에 개정 내용이 여러 개인데요. 주제별로 대략 묶으면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최소정수 기준 및 조정범위 조정 관련 사항과 비례대표제 확대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 확대 그다음에 통합특별시 지역구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공통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별로 묶었을 때 총 11개 정도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8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비교표가 8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회의는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광역 부분에 적용되는 사항과 9쪽의 기초 부분에 적용되는 사항 그다음에 광역과 기초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8쪽 광역 부분을 보시면, 먼저 의원정수의 조정범위가 현행은 의원정수의 2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30%까지 늘리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20% 또는 30%로 늘리는 안이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안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기준과 관련해서 현재는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인구감소지역,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시도별 형평성 등을 감안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의원 최소기준과 관련해서 현행은 5만 명 미만일 경우에 최소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인구 기준 수를 4만 명으로 낮추는 안이 있고요, 또한 현행에 기초별 최소 1명을 두도록 규정하는 안도 있고 현행 기준을 삭제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구와 관련해서 현행은 시·도의원은 소선거구제 1명을 뽑게 돼 있는데 현행을 유지하는 안이 있는 반면에 폐지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는 안이 있고 또한 중대선거구제 3명 또는 5명으로 뽑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시에 한해서 중대선거구제 3명 또는 5명 아니면 2명을 선발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선거구 시·도의원 정수의 10%를 비례의원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을 유지하는 안이 있고요, 15%로 늘리는 안, 20%로 늘리는 안 또 30%로 늘리는 안, 마지막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는 안이 있습니다.

9쪽 기초의원과 관련해서 보시면, 지역선거구를 현행은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되어 있는데 현행을 유지하는 안과 또한 중대선거구로 하되 3~5명으로 늘리는 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역시 현행은 시·도의원 정수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 관련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안, 15%로 늘리는 안 또 20%, 30%로 늘리는 안이 있습니다. 또 폐지하는 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소정수와 관련해서 현행은 7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9인으로 확대하는 안이 있고 반면에 7인으로 하되 25만 명 이상일 경우 3만 5000명마다 1명씩 추가하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 공통으로 규정된 사항으로서 비례대표 봉쇄조항과 관련해서 현행은 5%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3%로 낮추는 안 또는 3% 또는 1석으로 낮추는 안 그다음에 삭제하는 안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이상휘 의원안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김문수 의원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도의원 지역구를 종전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시·도의원 지역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별표3으로 규정된 기초의회의원 총정수 규정을 폐지하고 인구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장경태 의원안은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진성준 의원안은 서울특별시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고, 두 번째 정춘생 의원안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선출정수보다 적은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당이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때 해당 지역구 선출정수의 3분의 2 미만만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개정안의 세부 내역을 발제하기보다는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표를 보면 왼쪽에 볼드(bold)되어 있는 조정범위, 조정기준, 최소기준, 지역구, 비례, 최소정수 이런 부분들이 각각 논의되어야 될 항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세심하게 짧은 시간 내에 잘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측 전체 의견을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관위 의견을 듣고 나서 곧바로 위원님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선관위 의견은 자료가 없나요? 구두로만 그냥 하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자료는 저희들이 각 항목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국정심의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늘로 7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방의원 선거구획정 등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의결되어 선거 준비에 차질 없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늦어도 4월 22일까지는 선거법 별표2와 별표3 등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법률 시행일자와 국회본회의 의결 사이에 최소 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는 읍·면·동 분할 대상지역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의결 일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을 감안한다면 국회본회의 의결은 4월 17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시·도에서 자치구·시·군 선거구획정을 못 했을 때는 선관위 규칙으로 결정을 하도록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지노선은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일 전날인 5월 8일까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최근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이 가장 늦었던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때 일정을 감안한 것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월 17일 본회의 의결, 4월 22일 개정 법률안 시행 공포, 4월 24일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에 제출, 그다음에 5월 1일 시·도의회의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 시행, 5월 8일 선거구획정 선관위 규칙안 시행, 이런 일정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신 조정범위라든지 조정기준, 최소기준 이런 부분들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신다면 저희 선관위에서는 선거관리를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유일하게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의원선거와 광역의원선거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를 전국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수백수천 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선거운동, 선거공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선거비용 증가되는 여러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검토를 하신다면 일부 지역에 시범실시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실 위원님들도 많고 해서 사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시간은 5분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쟁점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속도를 좀 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주요 쟁점에 대해서 추상적 질의나 토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여야 위원님들 간에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추상적인 질의보다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그냥?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다 하는 걸로 하고요. 정춘생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순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행정실에서는 정춘생 위원님 그다음에 임미애 위원님 이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해서 순서를 잡아 주시면 되고, 정춘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가장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례대표 봉쇄조항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도 봉쇄조항 5%가 현재 있고요, 개정안으로 아예 삭제하는 내용 그리고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기 전에 낸 법안에 있어서는 3%로 하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3% 이상 득표 정당에 한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조항에 대해 지난 1월 29일 날 현재가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 제도하에서는 현재 결정 취지에 맞게 선거법 189조 1항 전체 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은 국회의원선거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저지조항 재도입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 비율을 고려할 때 비례 3% 지역구 5석이라는 저지조항을 폐지한다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 당시 국민의미래가 1석이 줄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마찬가지로 1석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3석이 줄고 늘어나는 곳은 2.26% 득표했던 자유통일당, 2.14% 득표했던 녹색정의당……

○정춘생 위원 차장님, 그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알겠습니다, 위원님.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5% 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 저지조항 변경할지 여부는 조금 더 내용이 다른데요. 우리나라 기초의원선거 제도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이미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는 15.3%가 비례대표입니다. 다마는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만 예외적으로 20%가 비례대표의원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과거 지방선거 선례를 보면 6.1%를……

○정춘생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6.1%를 득표한 정당에 1석을 배분하지 못한 경우가 그 당시에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방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비례대표의원을 무한정 확대하는 부분은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춘생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시간상의 이유와 현재 지금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의 준비 문제,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면서 지난번에 시범실시했듯이 시범실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전면 도입됐을 시에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일단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 부분이, 지금 하나의 기초단체장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 8400만 원인데요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마다 전국의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로 봤을 때는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선거공보 인쇄라든지 현수막 제작하는 부분 자체도 지금은 작은 구역에서 하고 있지만 그걸 광역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문제, 그다음에 선거사무원 채용하는 부분도, 선거법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바꿔 놔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법안 중에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검토 자료에 보면 정춘생 의원안 2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에 육박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차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정춘생 위원 현행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선출한 선출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선출권력이라고 비아냥받을 정도로 대표성을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은 저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무투표 당선 방지를 위해서는 찬반투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관위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께서 찬반투표와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찬반투표를 하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 법안 내용상으로 보면 투표용지 후보자의 성명 옆에 찬성과 반대 표시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라든지 투표지 분류기 인식을 위한 선거정보시스템을 전면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정춘생 위원 전면 도입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정확한 비용 산정은 안 되는데요 몇백억이라는 부분하고 저희들 최소한……

○정춘생 위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시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무투표 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는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한 정당이……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오늘 다 하셔야 되니까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5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임미애, 조승환, 이해식, 임종득, 이상식, 배준영, 윤준병 위원님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임미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통합특별시의회와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지금 시·도 인구 기준을 현행 기준으로 두고 기존의 방식대로 선거를 치러서 특별시의회를 구성하는 방식과 통합특별시 인구 전체를 평균 잡아서 인구 기준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현행처럼 인구 기준을 잡아서 각각 서로 다른 인구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시·도의회의원들을 합치는 방식으로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현재의 전남하고 현재의 광주 인구 똑같이……

○임미애 위원 예, 그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지역구 광주 20석, 전남 55석을 부여했을 때.

만약에 그런 형태로 법안이 나가게 되면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금 광주지역 같은 경우는 의원 일인당 평균 인구수 차이가 크다는 반발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안을 제출했던 사람인데요, 반발 이외에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없겠냐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후에 만약에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위헌 여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런 방안하고, 두 번째 방안으로는 통합특별시 전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인구수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광주 의석은 13석 늘어나는 반면에 전남 의석은 13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별개로 두고요. 기존의 방식대로 선거를 치러서 통합특별시의회를 구성할 때 이게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임미애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통합특별시 인구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의석수의 차이가 있는 거를 조정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는 13개가 늘어나지만 전남은 13개가 줄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인구하한선이 높아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전남의, 그러니까 도의원 수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수를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곳이 시물레이션을 했을 때 혹시 몇 개가 된다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아직 시물레이션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하나 생각했던 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중대선거구제를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통합되는 특별시 중에 예를 들면 광주만 중대선거구제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남 의석에 맞춰서 전남 의석 55석, 통합 인구수로 나누면 광주 의석 33석이기에 때문에 33석으로 하게 되면 각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3명 내지 5명 정도를 광역의원으로 선출하게 된다면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부칙 3조에 있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라든지 종전 전남과 광주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서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런 특별법 취지를 아따따라서 한 게 아닐까……

○임미애 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통합된 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치르는 것이 맞다, 그 중대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구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기초의 경우 무투표 당선 얘기가 계속되었잖아요. 그런데 법에 보면 저는 법안 발의를 3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았고 4인 선거구가 2인으로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3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지금 그 법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26조 2항에 지금 시·도 조례로 이것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인 선거구가 실제로 시·도의회에 가서 2인 선거구로 쪼개지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취지와 달리 시·도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2인 선거구로 다시 줄여 버린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 말고는 방안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입니다.

먼저 인구 기준 시점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에 규정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정개특위에서 결정을 하고, 논의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선관위 측이나 행안위 쪽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을 그냥 법에다가 명시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적극 찬성합니다.

○임종득 위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소위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시·도의원 지역구 확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지금 선관위에다가 요구할 것은 아니고 정개특위를 통해 가지고 조기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야가 똑같은 텐데 시·도의원 공천을 지금 신청 받은 상태고 또 선거운동도 하고 있고 면접 심사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매일 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 간사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안위하고 좀 논의를 긴밀하게 하고 이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정개특위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빨리 해 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의 울릉군이 라든가 영양군 같은 경우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선관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구 간 인구 비례 3 대 1 범위, 그러니까 인구 편차 상하 50%로 하는 부분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답을 했어요. 이 준수되어야 한대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개특위라든가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현재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최근 현재의 결정을 보면 3 대 1이 안 될 경우에는 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현재에서 판단하는 것의 출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데 현재가 다 그걸 판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누군가 선거인께서……

○임종득 위원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서 지금 제안한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 조정 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인접한 다른 지자체의 일부 읍·면·동을 병합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도서지역이나 일부 군 지역은 이것 20% 상향해도 안 됩니다. 턱없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읍·면·동을 병합한다라고 했는데 이 안을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들어 보니까 이게 지자체하고 지금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지자체의 기준하고 다르게 이루어짐으로써 지역대표성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표성을 약화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선관위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지적사항도 상당히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서는 항상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이라는 일관된 결정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도 인구 비율 3 대 1을 준수해야 되는 것

이 가장 중요하고 지역대표성 확보라든지 도서지역 또 도시와 농산어촌 간 극심한 인구 편차 해소는 그 다음으로 참작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행법상 20%로 되어 있는 조정지수를 활용한다면 헌법불합치,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총 9곳인데 부산 중구하고 전북 무주 같은 경우는 현행 2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산 중구는 13%, 전북 무주는 12% 정도면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러지 않은 나머지 7곳 같은 경우는 조정지수 자체를 최소 27%부터 200%까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조정지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7곳은 해당 기초단체 바로 인근에 있는 읍면동하고 병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 조정을 하고 나면 좀 해소가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울릉군이라든가 옹진군이라든가 영양군 같은 경우 여기는 예외적으로 1개 군에 1명의 대표를 둔다고 하는 부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을 부칙으로 예외를 둔다거나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현재에서 어떻게 결정을 낼지는 저희들로서도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종득 위원**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아마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논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차장님, 내부 승진하신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서 선관위 업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아 보여요.

저번에 제가 사무총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관련은 돼 있습니다.

차장님,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하고 정수 조정 이런 건 다 선관위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요? 그런데 왜 광역하고 기초의원, 선관위도 조직이 있잖아요. 광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시·군·구도 있는데 왜 그러면 광역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하고 선거 정수는 선관위에서 하지 않고 정개특위에서 하고 또는 시·도에서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헌법기관에서 한다면 주변에 여러 가지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변수를 다 없애고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지방의원 선거구확정위원회 역할을 부여해 주신다면 저희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률안 같은 걸 한번 제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 선관위에는 법률안 제출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 법률적인 여러 가지 정합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된 건지 이제까지 원인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입법적 미비인 것 같고요. 과거부터 사실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셨지만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만큼 좀 소홀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식 위원 국회의 권한이기보다는 저희들도 다른 할 일이 많은데 여러 가지 보니까 복잡하고 한데 그러면 제가 한번 해 볼 테니까 나중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이 말은 제가 하면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방의회, 그러니까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인 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 광역의원은 플러스 20%라는, 제가 옛날에 현직 경찰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모든 평가 기준을 보면 객관적 지표를 정량 평가라고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주관적 요소를 정성 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일관된 원칙은 뭐냐하면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그게 인구가 됐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플러스 20으로 해 놓으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이거는 선관위의 의견을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일부 의원님께서서는 30%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줄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현행 유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의견 동의하면서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입니다.

사무차장님, 인천 저희 지역구에 ‘배준영 의원은 각성하고 사과하라’는 현수막이 붙었는데 그 이유가 정개특위에서 빨리 결정을 안 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다.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붙였거든요.

근데 다수도 그러시고 위원장님도 그러신데 이제 너무 잠이 안 옵니다. 빨리 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개특위에서 인천 의원이 저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고 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는데 죄송하지만 좀 임박해서 냈어요. 그래서 오늘 법안에 안 실렸는데, 아시겠지만 용진군 같은 경우에는 7개 면이 있고 백령면은 222km를 가야 됩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고 4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 7개 면을 관할하는 시의원이 없으면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못 하고 예산도 확보 못 하고 제도도 못 해서 용진군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울릉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안부랑 선관위랑 의논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안도 그렇지만 제가 임박해서 낸 안을 행안부랑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이것도 좀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현행법이 이거 확정할 때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26조 4항을 바꿔 가지고 확정할 때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에서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 접근성이 현저한 자치구·시·군에 대해서는 인구 외에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 정수를 배분할 때 통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마·창·진 3개 통합을 2010년도에 했는데 통합 전 3개 시 의원 정수가 55명인데 그대로 합산돼서 유지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통합 초기에 지역의 대표성 보장과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한 정치적인 결단이었고 청주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청주, 청원 2개 시·군을 통합했는데 선거구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38명에서 39명으로 1명을 오히려 증원했습니다.

제가 인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제물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병렬적으로 합치면 11명이 되는데 그냥 최소 인구 비례로 하면 7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시·군 통합했을 때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목소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예가 있는데 물론 구의원 확정에 관련된 거는 이 지역에서 하기는 하지만.

창원이나 청주 사례를 비추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논리에 대해서는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마 통합 당시 해당 시·도의 인구 자체가 인구 폭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 수를 더 늘려 줄 경우에는 통합되는 곳에도 의원을 늘려 주고 그러지 않은 데는 그냥 현행을 유지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이번 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의석을 배분할 때는 통합 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인구가 늘었는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해당 지역에 의석을 배분해야 될 건지를 반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구별로 배분하는 거는 광역시·도에서 할 일이지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기초의원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기초의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정개특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시피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원 또 광역의원이 전국 평균보다 35~45%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관위나 행안부나 위원회에서도 좀 각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차장님, 인구 기준을 책정할 때 지금 주민등록 수로 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걸 유권자 수로 조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그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 한번 챙겨 보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헌법불합치 지역 9개 자치단체를 만약에 선거인 수로 산정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9곳 중 8곳은 인구수로 산정할 때와 차이 없이 어차피 헌법불합치 지역이 되고 한 곳, 부산 중구만 선거인 수로 했을 때는 해소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일단 내용은 꼭 불합치결정을 치유하기 위한 내용보다는 근본적으로 선거구 획정하는데 인구 기준에 대한 산출 기초를 바꿀 필요도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쭉 보시기 바라구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 말 그 자료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병 위원** 뭐 좋아요.

그다음에 현재의 투표가치 평등 이 내용을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데, 인구대표성이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 지역대표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호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대표성도 중요하고, 특히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결정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선언적으로는 담겨 있지만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거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정수 산정 시에 조정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수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6% 적용하고 있고 또 오히려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시·도의 경우에는 15%, 큰 20%에 육박하게 산정돼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사실은 법률에서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윤준병 위원** 입법적인 내용을 존중할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윤준병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전북의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20%인데 20%를 제대로 활용하면 위법적인 요소를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 걸 하라고 지금 조정 범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니까 이번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잘 활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차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무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가능한 것이고요.

○**윤준병 위원** 현재 인구 내용으로 보면 2만 4000이 하한선인데 무주가 2만 2000이어서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하면 거기다 조정이 필요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12%만 조정해도 가능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20% 하면 인구가 한 2만 2000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주는 해당이 안 되고 장수는 조금만 조정하면 되는 사안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합리적인 대안을 선관위 차원에서도 검토해서 이런 경우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고 인구편차 기준도 준수할 수 있고 지역대표성을 확대하고 시·도 간의 형평성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 게 조정 범위인 만큼 이런 내용이 가미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안을 적극적으로 산정해서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다만 비례 확대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비례성 강화로 지역대표성이 일정 부분 약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차장님도 이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데 지금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기본정수의 15%, 20% 이렇게 하면 총량에서 비례대표를 빼고 지역대표성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대표성 기본정수의 일정 부분을 비례로 할당하기 때문에 지역 몫을 뺏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것은 광역의원 선거하고 기초의원 선거가 지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먼저 설정해서 거기의 10%가 비례대표 의석이고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총 의원 수가 정해지고 거기의 10%가 비례대표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7인이면, 비례대표 1인이면 나머지 6인이 지역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비례가 늘게 되면 지역이 줄고 지역이 늘면 비례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광역의 경우에 이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고 기초는 적용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렇게 구별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비례대표성을 확장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차장님, 지금 헌법불합치 난 장수군 같은 경우에 어쨌든 다른 시·군·구를 편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를 편입한다 하면 공직선거법 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확정)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왜냐하면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 있는 군에서 이쪽의 지역구가 다른, 자치단체가 다른 쪽의 기초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26조 4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부칙에서 예외를 두고 있고……

○박덕흠 위원 예외는 어떻게 두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다른 광역의원선거구 내에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할 수 있도록이요. 부칙……

○박덕흠 위원 아니,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기초단체 지역이 다른데 A지역에 있는 사람이 B지역의 기초의원을 뽑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초의원만? 선거구가 광역의원을 따라가야 되니까. 광역의원이 타 인접 시·군·구를 갖고 오면 기초의원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의원지역구로, 광역의원지역구로 오게 되니까. 그렇지요?

이 법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치구·시·군 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군지역구 내에서 확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의원지역구라는 걸 삭제해야지만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 않고 또 기이한 현상도 안 일어나고.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데 만약에 26조 4항을 그렇게 개정해 버리게 되면 혹시나 게리맨더링처럼 전혀 엉뚱한 곳에, 같은 넓은 지역의 자치구·시·군에서 기초의원선거구 자체를 좀 엉뚱한 곳을 갖다 떼 버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됐든 그 지역구 인구가 예를 들면 5만 이상이 됐는데 선거구 도의원을 2명을 둔다 하면, 결국은 먼젓번에 지방선거 때도 옆의 읍·면·동 떼서 선거구를 획정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박덕흠 위원 그것은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도의원지역구 이것을 삭제할 하고…… 먼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말씀처럼 본문에다가 넣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기 때문에 부칙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부칙이든 뭐든 그것을 삽입해야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게 하면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주 기이한 현상이 안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칙으로 넣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감사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광역의원, 도의원지역구에서 한 내용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서일준 위원 간사님, 조금 먼저 하고……

○소위원장 윤건영 먼저 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서일준 위원님이 의원총회 가서 발언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서일준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기준 시점이 지난 선거 때는 10월 말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10월하고 금년 1월하고 별 차이 없는데 아무래도 인구의 어떤, 최근접된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말보다는 1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최근의 선거 통계를 따르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요. 최근의 인구 통계를 따르는 게 맞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서일준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인구 기준 시점을 1월 말로 해도 현재 선거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확정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은 관계없 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도 가능하면 최근의 기준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현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일 고민이 인구과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문제를 어떻게 보완 할 거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최소 기준을 5만에서 4만으로 낮추자 이런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이렇게 적용할 경우에 효과가 좀 있나요? 어떤가 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이 그것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5만 기준으로 1명씩을 준 곳이 65곳이고 4만 기준일 때는 84곳으로 나타납니다. 그 래서 한 19곳 정도가 4만으로 하게 되면 의석 수가 좀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 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강원도 5곳하고 전라남도 6곳 같은 경우에는 기존 8회 지선 때 5만 이 안 됐을 때도 2석을 배분한 경우가 있다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도 4만으로 낮추면 어느 정도 보완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조금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송재봉 위원 또 한 가지는 비례대표 의석이 좀 늘어나야 된다 이런 요구가 일관돼 있고. 특히 비례가 1석인 지역의 경우는 무투표 당선 비율도 높고 설령 투표를 한다 그 래도 어차피 한 당이 가기 때문에 사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비중을 15%에서 20%, 30%까지 늘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서 비례를 늘리는데 지역구가 줄어들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것이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런 지적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의 비중을 늘리면 결국은 최소 정수도 동시에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 현실적 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최소 정수 부분은 지방의회가 도입된 1991년 이 후에 같은 7인으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7인으로 된, 약간 불합리하게 적다는 그 지적도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 한 분이 늘어나는 경

우에 의원 한 분한테 지금 투자되는 비용 자체가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한 6600만 원 정도 또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4600만 원 정도가 순수하게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걸 감안한다면 규모가 작은 군 단위 지역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의원정수를 늘렸을 때 자치단체의 운영비용 자체가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게 해서 의원 한 명 늘어나는 비용이 공무원 한 명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과장급 정도 된다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공무원 인건비로 보게 되면 아마……

○**송재봉 위원** 그게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채용 자체를 과장급으로 바로 채용하기보다는 9급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송재봉 위원** 그걸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비용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이걸 너무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민주주의에는 불가피하게 비용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민의 대표성 또 지역대표성 또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대변자로서의 정치적 다양성 이런 가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비용 문제 이외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비용 하나만으로 비교한다는 것이 가치의 면에서 볼 때 역으로 등가성의 원칙에 맞나. 저는 그런 면도 좀 같이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제8회 동시선거 때 무투표 당선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 원인은 좀 분석된 게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일단 8회 지선 때가 490명입니다.

○**송재봉 위원** 예, 490명. 그전에 89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89명입니다.

차이를 보니까 무투표 당선된 곳들, 비례대표 중심으로 보게 되면, 지역구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대부분 양당 체제가 고착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그리고 정치 현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송재봉 위원** 3~5인 선거구가 늘어나면 결국 이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김문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이십니다.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승수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전남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통합이라는 엄청난 큰 변화가 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매우 강하고 그 요구가 전남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행 유지를 해 달라. 그리고 광주는 인구 대

비해서 광역의원 수가 적으니까 좀 늘려 달라. 그런데 어떻게 늘릴 것이냐? 지역구가 20명이니까 지역구를 2명씩 중선거구제로 뽑는 방식 정도로 해서 늘려 달라.

이게 저희 지역에서 전남·광주 국회의원들과 또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의원들이 통합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합의를 한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줬으면 하는 게,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4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은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대로, 그러니까 전남은 유지하고 광주는 지역구에서 2명씩 뽑는 걸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의정활동이라는 걸 하면 사람만 상대할 때는 인구수로 이걸 맞추는 게 맞지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의정활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순천 같은 경우도 서울의 면적보다 1.5배가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토지라든가 산림 또 농업 이런 것부터 해서 국토 위에 있는 모든 게 사실은 의정활동 대상이에요. 그런데 현재 판사분들이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상대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위헌 판정을, 인구수로만 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급여 관련된 게 나왔는데 지금 국회의원은 소위 행정부로 따지면 어느 급이에요? 장관급이다, 차관급이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차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광역의원은? 그리고 기초의원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그나마 국회의원은 급여라든가 이런 게 그렇다 치고. 광역의원의 급여가, 수석전문위원 있잖아요? 4급 수석전문위원보다 급여가 월 200 적어요. 연 2000만 원 적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의 급여가 자기 수석전문위원보다 훨씬 적어요, 월급이. 기초의원은 더 가관이에요. 8급, 요새 정책지원관이라고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좌관은 아닌데 약간 보좌관 같은 8급 한 이삼 년 차보다 기초의원 급여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식도 개선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희 민주당 내에 경선토론회를 한번 해 보려고 선관위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시·도당에서만 모든 걸 주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선토론회도 요즘 세상에 당원들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거나 부작용들도 많기 때문에 지역 언론사하고 유튜브 방송 정도 해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구별로 시장선거부터 도의원선거, 기초의원별로 전부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선관위에다 문의를 했더니 시·도당에서 주관하지 않는 토론회는 불가하다 그래 가지고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합동토론회라 해 가지고 체육관에 다 모여서 하는 이것만 가능하고, 그것도 시·도당이 주관해서. 각 지역구별로 언론사라든가 유튜브하고 해서 토론하는 게 지금 안 되고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우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원 배분과 관련해서

는 아까 임피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주에만 의원정수를 1명씩 늘려서 지역구마다 1명씩을 늘리는 방안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제 마무리 좀 짧게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리고 지방의원 경선토론과 관련해서는 당원 집회가 금지되는 게 선거일 전 30일입니다. 30일 전인 5월 4일 이전에 당원들만 모여서 집회신고를 하고 당원들만 모인 상태에서 내용들을 나누신다면 그 부분은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이용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분들만 모였을 때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같은 경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만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법상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기회를 잠깐만 주세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하시고 이해식 위원님 하겠습니까.

김승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율의 김승수입니다.

몇 가지 건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시·도, 시·군·구 의원정수 확대 문제들이 선거구 조정과 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수 확대는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확대하는 것은 이게 국민정서에 맞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인구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지방소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지자체에, 그러니까 광역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하한 기준을 예외로 두는, 특례 규정을 통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는 전체 의원정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저번 회의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결국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대표성을 지닌 분이 의원으로 선출돼 가지고 그 지역 일을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그 목적에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정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만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너무 치중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1개 정당이 독식을 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수 정당이 최소한의 의석을 차지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하한을 초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헌법불합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의 하나가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행정구역을 합쳐 가지고 광역의원을 뽑는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반대의견이 많고, 특

히 대구 같은 경우에도 군위가 대구로 편입돼 가지고 하한 미달인데 동구에 있는 동 하나와 군위를 합쳤을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서울시 면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금 100명이 넘는 광역의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의원이 군위군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전혀, 또 보면 군위와 대구 동구가 붙어 있지만 팔공산에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생활권은 또 다르단 말이지요. 뿐만 아니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포항과 울릉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한을, 특례 조항을 두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윤건영 의원 제안 법안을 보면 해외 재외국민 투표소 기준을 3만 이하에서 관할구역 2만 이하로 줄이는 이런 안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앞서 송재봉 위원이 얘기했던 사전투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읍·면·동당 1개소만 설치하다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할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사전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비용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투표의 투표소를 확대하는 부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와 관련해 지금 2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법안하고 윤준병 의원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결국은 기존에 공표를 하지 않은 그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선관위 보고의무가 없는데 선관위 보고를 의무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 또 입후보 하려는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유로운 선거운동,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될 선거운동마저도 압박감을 줘서 제대로 못 하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선관위가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한 불안을 후보자들은 감추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악용되거나 오용됐을 경우에 결정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에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차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 하는 문제, 이걸 사실 우리 정치 지형, 구도 이런 것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든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런 방식을 좀 달리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선관위가 의견을, 안을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의 독식 문제와 함께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앞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습시다라는 결국 갈라 먹기예요.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해서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무투표로 당선되는 지역이 10~20%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50%를 넘어 가지고 60%, 70%까지 육박하는 건 너무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지난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대표성이나 비례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자료 같은 것도 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어떤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게 없어요.

특정 지역의 독식 문제라든가 또는 무투표 당선의 비율이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 이게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긴 한데, 그런데 이것 제도로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중대선거구제를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데 서울만 해도 말이에요, 중대선거구제를 특히 중선거구제를 도입을 해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시범실시를 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적용을 안 하는 그런 거지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를 이렇게 많이 되 가지고 갈라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후보하는 기초의원 출마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옆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로 해서 출마하면 당선되는 것을 보장하는데 왜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로 늘려 가지고 선거 당선을 불투명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입장에서 선뜻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시범실시했던 지역에서조차 정수는 유지를 하되 선거구는 복귀를 하겠다. 3·4인 선거구가 아니라 2인 선거구로 복귀를 하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내지는 좀 진전된 그런 선거 제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입장을 천명을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용역 결과 보고서를 낸다든지 해서 어떤 여론 조성에 일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어떤 중앙선거위의 입장 발표라도 해야 그래야 정개특위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조국당을 비롯해서 소수당 의원님들은 단식까지 하나 마냐 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장 표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전체회의 때 말씀드릴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꼭 좀 보고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 짧게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돼요? 아까 시간 때문에……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예.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무투표 당선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의 경우 무투표 당선을 보면요 2인 선거구에서 대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2인 선거구를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3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3인 이상으로 기초의회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지금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만약에 전면적인 3인 선거구를 도입하려면 지금 시·도마다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또 전체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하고 자치구·시·군 의원 지역구가 일치되지 않고 나누어져 있을 때 겹치는, 그러니까 어느 한 읍·면·동은 양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인구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임미애 위원 혹시 시·도의회에서 어느 정도 안 만들어진 게, 그 안에 대해서 살펴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시·도에서 만든 획정안은 아직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 무투표 당선을 줄이기 위한 선관위의 안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광역의회의 무투표 당선도 심각한 문제지만 기초의회 2인 선거구의 무투표 당선율이 27%가 넘어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된 대안을 지금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저는 3인 이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면 실시가 어렵다면 4인 이상을 쪼개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박아 두든가 아니면 지금 인구를 조정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이 곳은 전면적으로 3인으로 조정을 한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권고사항은 선관위에서 시·도의회에 내려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 권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도의회에서 따르지 않았을 때 또 어느 시·도는 존중하고 어느 시·도는 존중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법률에다가 강제화를 시키는 게 가장 정확한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 입장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다’라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니다.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 아니냐,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 봤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구체적인 논의 진전이 나가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해서 빨리빨리 하자라고 하셨던 것들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추상에 머물러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 소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서 안건별로 추상이 아닌 구체성을 떨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도록 여야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물어볼 것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안건별로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진행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알겠습니다. 안건 논의를 하면 또 너무 배가 산으로 갈까 봐요. 아무튼 시간 관계상 오늘 소위원회 심사는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문수 김승수 김은혜 김재섭 김한규 박덕흠 배준영 서일준 송재봉 윤건영
윤준병 이상식 이해식 임미애 임종득 정춘생 조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박연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차장 강동완

법제국장 박세진